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2
----------	--------

제출연월일 : 2020년 2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원칙 확대(안 제3조제4항)
- 나.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개정(안 별표1)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9. 11. 13. ~ 12. 03.(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강서구청장”으로,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사또는”을 “공사 또는”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최적구배”를 “최적기율기”로 하며, “복구공사시”를 “복구공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의2의 제목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을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원인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준용 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적게된”을 “적게 된”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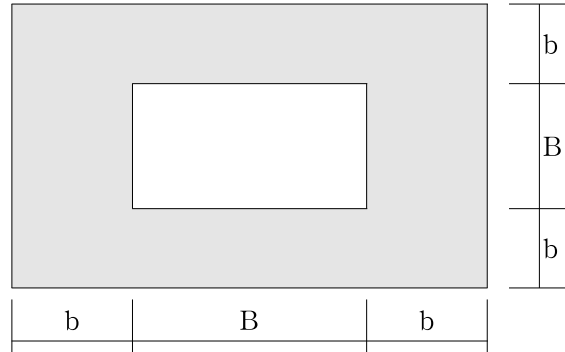
구분	차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1.2m × 1.2m	1.2m × 1.2m	1.2m × 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간접손계영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간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포장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4cm) 비용
	감독업무비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금액 + 간접복구금액) × *요율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감독업무비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3. 굴착폭(B), 간접손계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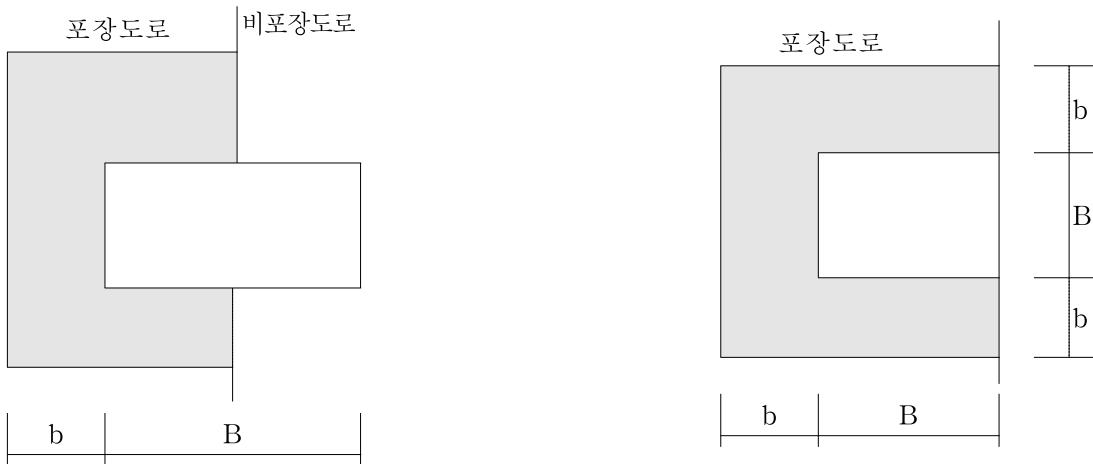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계영향(b)

1) 표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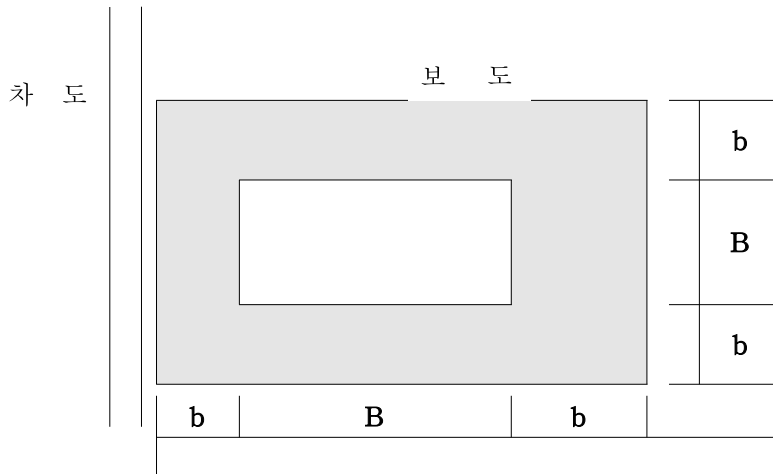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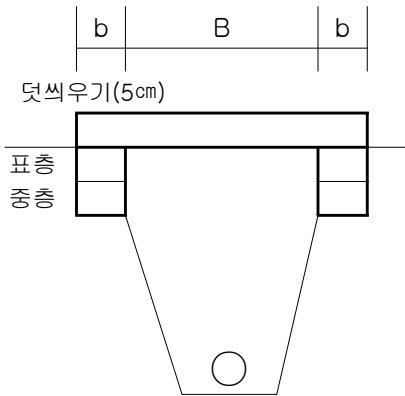
보차도경계블록(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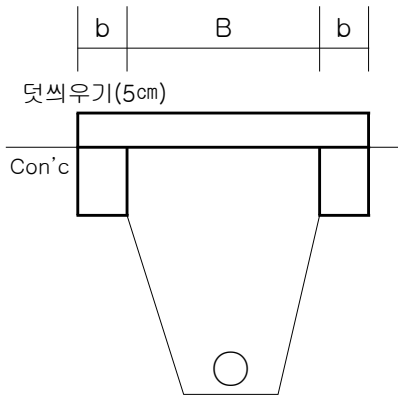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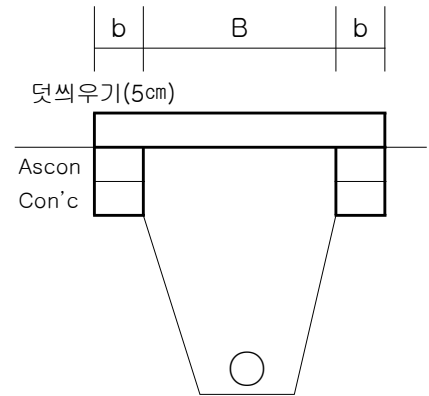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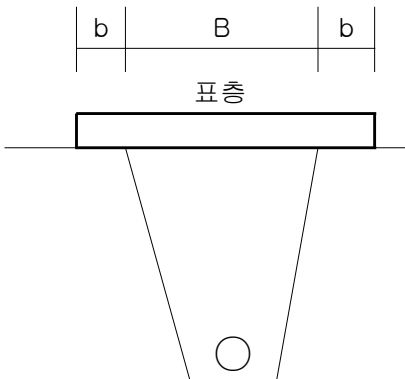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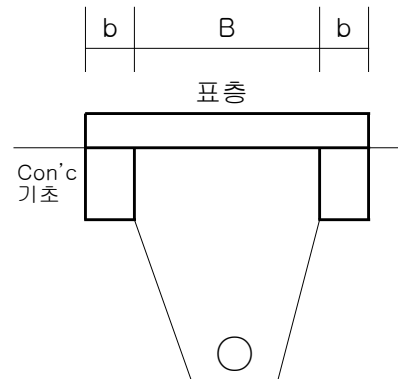


2)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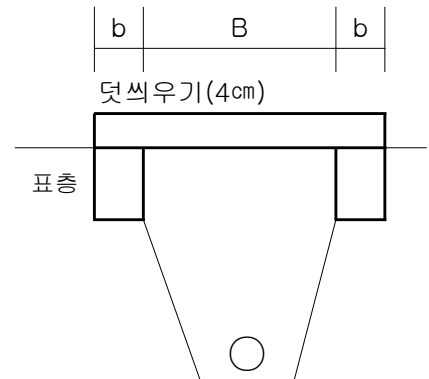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계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계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 ④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계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계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u>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u>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u>공사또는</u>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u>원인자부담금</u>을 징수한다.</p> <p>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p>	<p>제1조(목적) ----- -- <u>강서구청장</u>----- ----- ----- ----- <u>원인자부담금</u>----- ----- ----- ----- -----.</p>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u>공사 또는</u> ----- ----- ----- ----- ----- ----- ----- <u>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u>----- -----.</p> <p>② ----- ----- ----- ----- -----.</p>

른 행위에 시행자가 직접손계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계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 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 아니한다.

③ -----
----- 최적기울기 -----

----- 복구공사 시 -----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생략)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생략)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케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원인자부담금 -----

----- 준용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

1. (현행과 같음)

2. -----

-----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생략)

②·③ (생략)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

(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분	차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1.2m × 1.2m	1.2m × 1.2m	1.2m × 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간접손계영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인장부문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p style="text-align: center;">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장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티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구비	직접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구비	간접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구비	간접	<p style="text-align: center;">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분의 공사감리업무 요율</p>	

된 ---.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

(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분	차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1.2m × 1.2m	1.2m × 1.2m	1.2m × 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간접손계영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인장부문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p style="text-align: center;">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장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티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구비	직접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구비	간접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구비	간접	<p style="text-align: center;">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금액 + 간접복구금액) × ※요율</p>	

<p><신 설></p> <p>3. (생 략)</p> <p>4. (생 략)</p>	<p>※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지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감독업무비 요율 범위 내 에서 정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 안전교통국 도로과 과장 강원기

(담당 : 시설7급 박성림 / ☎ 2600-6408)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 상위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원칙 확대(안 제3조제4항)
-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개정(안 별표1)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9-47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도로과	통보(조치)일		2019. 11. 2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56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도로과	
	담당자명	박성림	전화번호 02-2600-640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1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로과)	상위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19년 11월 18일</p> <p>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p> <p>(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p> <p>도로과장 귀하</p>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이전·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